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강은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5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21.

발 의 자 : 강은미 · 심상정 · 이은주
강민정 · 배진교 · 장혜영
윤후덕 · 윤미향 · 류호정
고영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급업자와의 협상에 있어 거래상 약자인 대리점 측이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.

이에 대리점에게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을 부여하고,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며,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여 대리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).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5(대리점단체의 구성 등) ① 대리점은 권익보호와 거래상 지위향상을 통해 합당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(이하 “대리점단체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·유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구성된 대리점단체는 그 공급업자에 대하여 대리점거래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공급업자는 성실하게 그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, 협의에 따른 결과를 거래조건 및 계약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공급업자는 대리점단체의 구성, 가입, 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한 자와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, 대리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2조의6(계약의 기간 및 갱신 등)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. 이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위반하는 등의

귀책사유가 없으면 대리점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② 공급업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중요위반사실과 대리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약의 기간 및 갱신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2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2조의5(대리점단체의 구성 등)</u></p> <p><u>① 대리점은 권익보호와 거래상 지위향상을 통해 합당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(이하 “대리점단체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·유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구성된 대리점단체는 그 공급업자에 대하여 대리점거래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공급업자는 성실하게 그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, 협의에 따른 결과를 거래조건 및 계약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공급업자는 대리점단체의 구성, 가입, 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한자와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, 대리점단</u></p>

<신 설>

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2조의6(계약의 기간 및 갱신

등)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. 이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대리점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② 공급업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중요위반사실과 대리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.